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 계 약 서

---

---

등록분야 : 전시디자인설치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가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전시디자인설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전시디자인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전시디자인설치 설계 및 시공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전시디자인설치의 철거
3. 시설물의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시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괘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 장치공사를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전시디자인설치공사가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전시디자인설치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 전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전시 장치물이 기한 내에 완전히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치 및 철거 공사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전기시설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전기시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전기장치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전기장치 설계 및 시공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전기장치의 철거
3. 시설물의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전기장치공사가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전기장치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 전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전기장치물이 기한 내에 완전히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치 및 철거 공사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급배수/Air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가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급배수/Air)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급배수/Air 장치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급배수/Air 장치 설계 및 시공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급배수/Air 장치의 철거
3. 시설물의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의 급배수/Air 장치공사를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급배수/Air 장치공사가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급배수/Air 장치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 전시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급배수/Air 장치물이 기한 내에 완전히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급배수/Air 장치 및 철거 공사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카펫/파이텍스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카펫/파이텍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카펫/파이텍스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카펫/파이텍스 설계 및 시공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카펫/파이텍스 공사의 철거
3. 시설물의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의 카펫/파이텍스 공사를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카펫/파이텍스 공사가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카펫/파이텍스 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 전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카펫/파이텍스 장치물이 기한 내에 완전히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카펫/파이텍스 공사 및 철거 공사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가구비품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전시디자인설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가구비품 임대를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가구비품 임대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가구비품 임대
3. 시설물의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 불괘광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의 가구비품 임대를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가구비품 임대료가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가구비품 임대 용역으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 전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가구비품 임대 장치물이 기한 내에 완전히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가구비품 임대 용역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경비용역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가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경비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경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경비 용역
2. “계약상대자”가 배치한 경비 용역
3. 시설물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의 경비 용역을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경비 용역이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배치한 경비 용역으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 전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보상에 지급된 금액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경비 용역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운수통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가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운수통관)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운수통관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운수통관 용역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운수통관 용역
3. 시설물의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의 운수통관 용역을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운수통관 용역이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운수통관 용역으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 전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운수통관 용역이 기한 내에 완전히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수통관 용역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철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가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철거)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 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철거공사
2. 시설물의 원상회복
3.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의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철거공사가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철거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완전히 철거공사가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가스설비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가스설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가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가스공사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가스공사의 철거
3. 시설물의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의 가스공사를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가스공사가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가스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완전히 가스공사가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가스공사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지게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지게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지게차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지게차 용역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지게차 용역의 철거
3. 시설물의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의 지게차 용역을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지게차 용역이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지게차 용역의 부실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완전히 지게차 용역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전시장”이 지정한 제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지게차 용역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리깅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리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 전시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전시디자인설치 공사 중 천정 truss를 이용한 전시디자인설치가 포함된 경우, 그에 대한 시공을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천정 truss를 이용한 장치의 시공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전시디자인설치의 철거
3. 시설물의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 양도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 제 10조 (사고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 장치공사를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 12조 (계약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 13조 (용어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4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전시 장치공사가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전시 장치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 전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전시 장치물이 기한 내에 완전히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치 및 철거 공사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광고싸인물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광고사인물)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옥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광고물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광고물 설치공사
2.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광고물의 철거
3. 시설물의 원상회복
4.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종업원 채용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채용 시 신분 사항에 있어 보안상 또는 형사상 하자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시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 8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 인원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작업도구 및 장비보완,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 9조 (금지 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 제 10조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가 본 건 광고물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인부 등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전시장”의 재산상 손해 및 지연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있는 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제 12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 13조 (용어 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4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 15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광고물 설치공사가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광고물설치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 전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광고물이 기한 내에 완전히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철거 공사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



2016년도 DDP 등록업체

---

# 계 약 서

---

등록분야 : 구조해석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이하“전시장”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DDP 등록업체(분야 : 구조해석)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목적)**

“전시장”은 “계약상대자”를 실내·외 전시장, 회의실, 부대시설, 시설물이 인접한 곳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전시 장치공사 중 KINTEX 요령에서 규정한 구조검토가 필요한 장치물에 대해 (단, 천정 truss를 이용한 전시디자인설치가 포함된 경우) 구조해석을 담당하는 업체로 등록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조 (용역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할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의 시설물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용역의뢰 업체 전시디자인설치에 대한 구조해석
2. 검토가 완료된 리깅 장치물 설치 시 검토의 중요 요소(예: 설치point)에 관한 감독
3.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계약 보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동 보험으로 총당하고,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보험중 본 조에 의하여 “전시장”에게 하자 보수의 부분을 완료해야한다. 완료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후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제 6조 (영업관련 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취지에 따른 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관서에서 발급하는 관련 영업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내 구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된다.

**제 7조 (업무체계 정비)**

1.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의 사용구역 내에서 “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장비와 적정 인원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전시장”은 본 계약의 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의 개선, 인원의 증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전시장”이 납득할만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8조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전시장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폭발물, 위험물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 반입
2.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3. “전시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난방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반입 또는 사용행위
4. “전시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시 서면 등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5. “전시장”의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규정,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행위

### 제 9조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가 본 건 구조계산, 검토 및 감리를 수행하는 구역 내에서 “전시장 자체의 하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의 직원들의 직무(설치물의 안전검토)상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전시장”의 재산 또는 명예에 손해(훼손)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 제 10조 (계약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부당한 가격 요구, 가격 덤핑, 업자 상호간의 부당(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3. “전시장”으로부터 총 3회 이상 사유서를 작성 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를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파산, 강제집행, 재산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 11조 (용어해석)

1. 본 계약 체결 시 별첨한 “전시장”의 “시설물 관리(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2.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2조 (분쟁 해결 )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시장”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 13조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2조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전시장”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시장”은 다음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비용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작업신고서의 매표관련 설치공사가 전시회 개최 시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대행한 제반 경비 전액
  - ②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의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전시장”의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에 상당하는 대가
  - ③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매표관련 설치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전시품 파손 등 전시 기간동안 발생한 사고 보상에 지급된 금액
  - ④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매표관련 시설물이 기한 내에 완전히 철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시장”이 지정한 제 3자가 이를 철거하고 이에 소요된 대가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한 업무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전시장”은 본 계약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출입하는 경우 “전시장”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철거 공사 시 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전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전시장”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

“계약상대자” \_\_\_\_\_

\_\_\_\_\_